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8 인으로 한다.입소 정원은 18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간까지이며, 재계약 조건(인정등급 갱신, 등급 변동,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변경) 발생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시군구 입소 의뢰서 확인 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시설급여>

<2024년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비 고
요양급여		84,240	78,150	73,800	
비 급 여	상급침실이용료	해당없음			
	식재료비(1식)	3,500			경관유동식 1,000
	간식비(1회)	해당없음			
	이/미용비용 등	해당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일 반	20%
기초수급권자	0%
감경대상자	6%, 8%, 12%

진료구분	일반(20%)	감경(12%)	기초생활수급자
초진(17,610)	3,520	2,110	0
재진(12,590)	2,510	1,510	0

제3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1. 입소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월 이용료 납부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당사(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④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당사에게 통보
-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보호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④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4조 【 계약해지 요건 】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의 최고 통지를 받고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시설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제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

나.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는 가족및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정원기준)
- ② 화재보험 가입

